

발송처

대법원

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

06590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,  
A동 103호(읍내리, 한국통신사원아파트)

원고(상고인  
)

임그루



2060713 - 742216 ↓

(민사과 특별3부(사))

2018-035-45459-006

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대법원

2018두 454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
예정 기일 :

담당재판부 : 특별3부(사)

법원사무관 박원재

직통 전화 : 02-3480-1366

팩 스 :

e-mail :

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  
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 
사건진행과 관련된 정보(송달과 확정내역 포함)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 
(<http://www.scourt.go.kr>) '나의사건검색' 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  
다만, 부동산등경매사건은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홈페이지(<http://www.courtauction.go.kr>)  
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

대 법 원

제 3 부

관 결

사 건 2018두454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
 원고, 상고인 임그루  
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, 에이동 103호  
 피고,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
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강영민, 이민규, 이종우  
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  
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 
 대표이사 황창규  
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8재누99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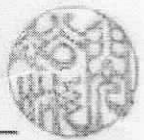



이 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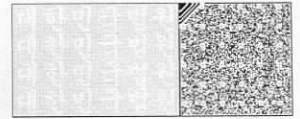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



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.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8. 8. 30.

재판장	대법관	민유숙	<u>민 유 숙</u> 
주심	대법관	조희대	<u>조 희 대</u> 
	대법관	김재형	<u>김 재 형</u> 
	대법관	이동원	<u>이 동 원</u> 



# 정본입니다.

2018. 8. 30.

대법원

법원사무관 박원재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